

오스트리아공화국과 대한민국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2010 년 1 월 23 일에 비엔나에서 서명된 오스트리아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 16 조 제 1 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인

- 오스트리아의 연방 노동사회문제·소비자보호부는
- 한국의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정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 규정

제 1 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협정 제 1 조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연락기관

협정 제 17 조에 따라 다음을 연락기관으로 지정한다.

오스트리아공화국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 사회보험기관연합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

제 3 조

연락기관의 임무

1.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에 명시된 임무를 가진다.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연락기관은 상호 지원하고 관련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물론 상호간에도 직접 교신한다.
2. 연락기관은 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양국 언어로 된 서식에 합의한다.
3. 이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당사국 사이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락기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의 전자적 교환에 합의한다.

제 2 부

적용법령에 관한 규정

제 4 조

적용법령 증명서

1. 한쪽 계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 7 조 내지 제 9 조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이 조 제 2 항에 지정된 그 한쪽 계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국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증명서의 신뢰성이나 정확성과 관련하여 합당한 의문이 있는 경우 이 조 제 2 항에 지정된 양 계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교섭한다.

2. 이 조 제 1 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오스트리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질병보험기관에 의해,

한국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발급된다.

3. 이 조 제 1 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계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 및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그 사본을 제공한다.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 5 조

급여청구서의 처리

1.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협정 제 19 조 제 2 항과 관련하여, 제 3 부가
적용되는 급여 청구에 대해 양 연락기관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상호간에
직접 또는 연락기관을 통하여 통보한다.

2.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의 결정에 관한 기타 다른 사실을 상호
통보하며 적절한 경우 의료진단서를 송부한다.

3.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되는 정보를 검증한다. 검증되는 정보의 종류는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된다.

4.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에 대한 결정을 상호 통보한다.

제 6 조

급여의 지급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연금 및 다른 현금급여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 7 조

통계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 4 조에 따라 발급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통계를 12 월 31 일 기준으로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합의된 서식으로 매년 제공된다. 이러한 통계는 수급자 수와 급여 총액을 포함한다.

제 4 부

최종 규정

제 8 조

존속기간

이 행정약정은 협정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010 년 1 월 23 일에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

연방노동사회문제·소비자보호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를 위하여

루돌프 훈스토르퍼

전 재 회

